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04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안상훈 · 박덕흠 · 고동진
배현진 · 김미애 · 백종현
박성훈 · 김소희 · 주호영
김은혜 · 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규제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 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아동친화업소의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과 그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아동친화업소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은 영업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3.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소가 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인증 대상 업종, 인증 및 인증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아동친화업소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2. 인증표시 발급 및 홍보

3. 가족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제75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친화업소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3조의3(아동친화업소의 인증)</u>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과 그 동반 보호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아동친화업소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은 영업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
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
으로 변경한 경우

3.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된 경우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
소가 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6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신 설>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경우 해당 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인증 대상 업종, 인증 및 인증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아동친화업소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의 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2. 인증표시 발급 및 홍보
3. 가족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④ (생략)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친화업소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u>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